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10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김상훈·강대식·김소희

김선교 • 서명옥 • 고동진

박충권 • 이달희 • 박수영

권영진 · 신동욱 · 김대식

이헌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,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,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,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 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,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 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제4호, 제19조의2 및 제30조 제2항 신설 등).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9조의2(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(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,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 은 61세, 자녀가 3명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	제19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
진)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	진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	
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	
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	
수 있다. 다만, 경위 이하의 경	
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	
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	
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	
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	
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
	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
	<u>는 사람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9조의2(다자녀 양육 경찰공무
	원에 대한 승진 우대) ① 경찰
	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(제7조
	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
	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
	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
	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

제30조(정년) ①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⑥ (생 략)

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,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(정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경찰공무원의 연 령정년은 61세, 자녀가 3명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찰공무원 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.

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